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5.

발의자 : 노옹래 · 장정숙 · 이석현

김병관 · 황희 · 김영진

유동수 · 최명길 · 이개호

안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2016. 9. 23. 시행되는 「저작권법」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별도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고,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 명령(제133조의2), 반복 침해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 권고(제133조의3) 등 이른바 ‘저작권 삼진아웃제’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려고 함.

삼진아웃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“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” 위원 구성을 법정화하였음(제112조의2제2항).

그런데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원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 조항이 빠져있음.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결함은 바로 잡으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과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함(안 제122조의6제2항).
- 나.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2조의6제4항).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408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2조의6제2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회의 추천을 받는 자가 위원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408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22조의6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법률 제1408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22조의6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하되,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국회의 추천을 받는 자가 위원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
③ (생략)	
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, 문화산업 및 법률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. <후단 신설>	
⑤ · ⑥ (생략)	